

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비나텍(주)

가. 과업개요

구 분	내 용
과 업 명	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
과업내용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지원사업관련 업무지원)
계약방법	수의시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계약금액	금 20,000,000원(VAT 별도)

나. 컨설팅업무의 대상 및 범위

구 분	내 용
사업계획	1)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배경, 신청기술의 특징, 사업효과 등 전반적 내용 기술(단, 사업비용 관련 항목은 컨설팅 의뢰기관이 기재) 2) 사업신청 관련 서류 취합 - 컨설팅 의뢰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요청 및 검토
사업선정	1) 대면평가 발표자료 작성 2) 현장조사(한국환경공단 방문 시) 참석(조사진행 중 애로사항 해결) - 현장조사 후 미비자료 보완
착 수	1) 월간보고 - 현장여건 파악 후 진행사항 보고(사업비 집행내역은 컨설팅 의뢰기관이 기재) 2) 중간보고 - 중간성과 취합 및 보고(사업비 집행내역은 컨설팅 의뢰기관이 기재) 3) 현장조사(한국환경공단 방문 시) 참석(조사진행 중 애로사항 해결) - 현장조사 후 미비자료 보완
준 공	1) 준공보고 - 사업효과 증빙에 대한 업무 지원 - 준공보고서 작성 - 발표자료 작성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의뢰기관의 정성적 업무 지원을 이행하고, 의뢰기관은 사업의 계약 및 예산관리를 수행

컨설팅 의뢰기관(甲)과 컨설팅 기관(乙)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과 같이 위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계약의 내용 및 금액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2. 본 계약에 소요되는 용역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함.
3. 본 계약의 보완조치는 “을”이 책임짐.
4. “갑”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용역이 지연되는 부분은 “을”이 책임지지 않음.
5. 본 계약 외 기타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이 가능함.

□ 일반조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신뢰에 의거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의 범위

1. 본 용역 계약 범위는 “갑”의 지원사업(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을 계약범위로 한다.
2. “을”은 “갑”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의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사업효과 분석, 월간보고 등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성적 업무를 지원한다.

□ 과업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과업의 변경

“갑”의 사정에 따라 용역범위가 추가, 감소 또는 설계기준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용역대금의 변경 및 용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 과업의 대가

1. “갑”이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은 위 표준계약서의 금액에 부가가치세(10%)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계약금액의 지급

1.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은 “갑”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통해 “을”에게 지급한다.

2.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갑”이 “을”의 지정계좌로 현금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대가의 지급이 1개월 이상 체납 시 “을”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의 수행

“을”의 용역인원이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요청 시 “갑”은 본 용역업무에 협조하고 “갑”의 사정으로 인한 용역업무 연기 또는 제공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을”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보안유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본 용역과 관련된 여하한 사항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책임

“을”은 본 계약의 용역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하며, “을”이 고의로 본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하자 및 배상책임 - 해당 없음

☐ 지체상금 - 해당 없음

☐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해당 없음

☐ 해석상의 차이 결정

본 계약의 각 조에 대해 “갑”과 “을”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합의에 의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계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저작권

이 계약에 의한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 특수조건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동등하게 합의하여 특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